

##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7. 11.  
제출자 : 이천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,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,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과 취약지역 대비책, 통제구역 설정 등의 사항을 심의함(안 제2조).
- 나.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그 의장은 시장이 되며,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시의회 의장, 군부대의장, 기무부대의장, 안기부 관계자, 경찰서장, 교육장 등으로 정함(안 제3조).
- 다.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함(안 제4조).

## 이천시조례 제 호

###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,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"지원본부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의회의 심의사항) ①협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

1. 통합방위 대비책
  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  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
-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"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촉약지역 대비책
  2. 통제구역 설정
  3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제3조 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그 의장은 시장이 되며,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.

1. 이천시의회 의장
2.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
3. 국군 제307기무부대의 장
4. 국가안전기획부 경기지부 관계자
5. 이천경찰서장
6. 이천교육장
7.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③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1. 총무담당간사 : 총무과장
2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
3. 심리전담당간사 : 문화공보담당관

제4조 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,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위으로 편성한다.

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
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제5조 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)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# 1.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

- 가.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
  - 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·유지
  - 다. 취약지역안 주민신고망의 조직
  - 라.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통과 홍보활동
  - 마.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
  - 바.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·봉사활동의 실시

## 2. 개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

- 가. 10년생 이상의 입목
  - 나. 모래벙커 또는 연못

다. 이동식 장애물(개펄지대) 사용하지 아니하는

- 라.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·문화시설 등의 구조물

### 3.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

- 가.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  
나.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

부 록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